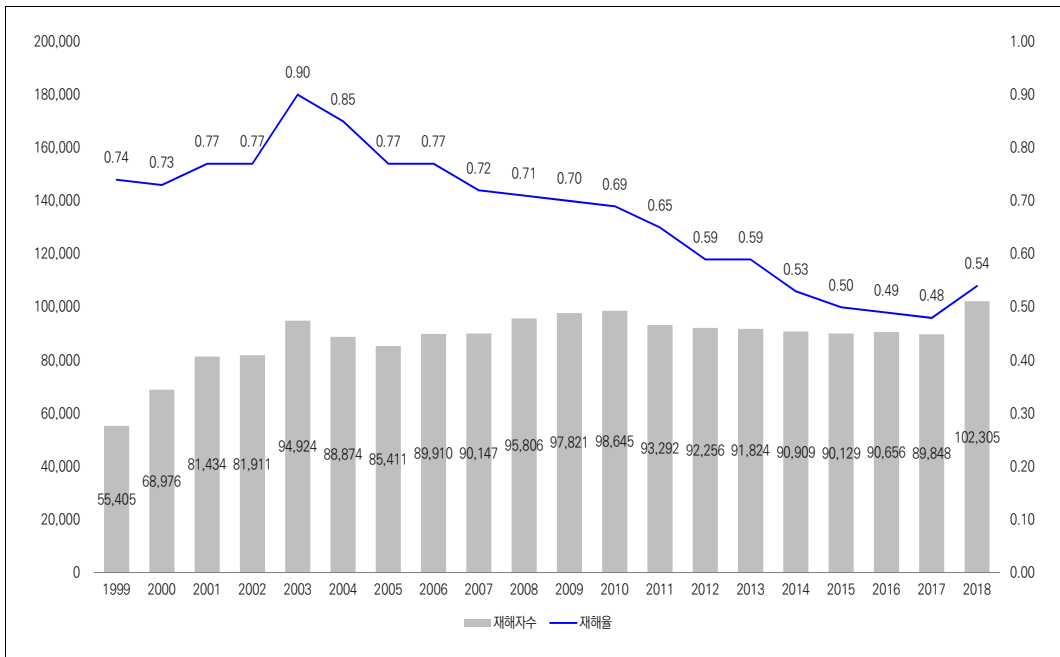


# 산업재해율 추이 및 현황

-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1999년 0.74%에서 2018년 0.54%로 최근 20년 동안 감소하였으나 산업재해자 수는 102,305명으로 증가하였음.
- － 산업재해율은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0.70%대를 유지한 이래, 2010년부터 0.69%가 되었으며 이후 0.50% 수준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임.1)

[그림 1]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 및 산업재해율 추이

(단위 : 명, %)



주 : 재해율은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함(재해자 수/근로자 수×100)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『산업재해현황분석』, 각 연도.

1) 2003년과 2004년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집단요양신청이 증가하여 산업재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『최근 10여 년 산업재해 증가원인 분석』).

- 재해자 수는 2018년 102,305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부터 추진한 추정치 원칙 도입, 사업주확인제도 폐지,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<sup>2)</sup> 등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해자 인정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2018년 재해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,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, 제조업에서 36.66%, 27.06%, 26.76%가 발생하였으며, 재해자의 78.31%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였음.

〈표 1〉 우리나라 산업별 산업재해를 비교(2017년, 2018년)

(단위 : 명, %)

	2017년			2018년			재해자 수 증감 (증감률)	
	근로자 수	재해자 수	재해율	근로자 수	재해자 수	재해율		
전 체	18,560,142	89,848 (100.00)	0.48	19,073,438	102,305 (100.00)	0.54	12,457 (13.86)	
산업 별	광업	11,199	1,897 ( 2.11)	16.94	11,697	2,225 ( 2.17)	19.02	328 (17.29)
	제조업	4,149,966	25,333 ( 28.20)	0.61	4,152,058	27,377 ( 26.76)	0.66	2,044 (8.07)
	건설업	3,046,523	25,649 ( 28.55)	0.84	2,943,742	27,686 ( 27.06)	0.94	2,037 (7.94)
	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	75,496	87 ( 0.10)	0.12	76,967	108 ( 0.11)	0.14	21 (24.14)
	운수창고통신업	838,006	4,237 ( 4.72)	0.51	873,232	5,291 ( 5.17)	0.61	1,054 (24.88)
	임업	82,773	1,124 ( 1.25)	1.36	89,751	1,041 ( 1.02)	1.16	-83 (-7.38)
	어업	5,289	59 ( 0.07)	1.12	5,416	66 ( 0.06)	1.22	7 (11.86)
	농업	76,033	555 ( 0.62)	0.73	83,540	648 ( 0.63)	0.78	93 (16.76)
	금융 및 보험업	764,141	312 ( 0.04)	0.35	778,105	358 ( 0.35)	0.05	46 (14.74)
기타의 사업	9,510,716	30,595 ( 34.05)	0.32	10,058,930	37,505 ( 36.66)	0.37	6,910 (22.59)	
규모 별	5인 미만	2,813,885	29,597 ( 32.94)	1.05	3,030,676	32,568 ( 31.83)	1.07	2,971 (10.04)
	5~49인	8,069,832	42,929 ( 47.78)	0.53	8,306,786	47,554 ( 46.48)	0.57	4,625 (10.77)
	50~99인	1,921,118	6,066 ( 6.75)	0.32	1,971,076	7,116 ( 6.96)	0.36	1,050 (17.31)
	100~299인	2,500,364	5,408 ( 6.02)	0.22	2,510,402	7,217 ( 7.05)	0.29	1,809 (33.45)
	300~999인	1,700,950	3,145 ( 3.50)	0.18	1,701,468	4,500 ( 4.40)	0.26	1,355 (43.08)
	1,000인 이상	1,553,993	2,703 ( 3.01)	0.17	1,553,030	3,350 ( 3.27)	0.22	647 (23.94)

주 : 1) ( )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산업별, 규모별 비중임.

2) 기타의 사업에는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·소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음식·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
자료: 고용노동부, 『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』.

2) 추정치 원칙(2017년 9월) : 작업기간·노출량 등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.  
사업주확인제도 폐지(2018년 1월) :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를 폐지함.

적용사업장 확대(2018년 7월) :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(2천만 원 미만),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(총 39,740개소)

-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37,505명으로 재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(27,686명)과 제조업(27,377명)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.
  -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2,568명, 5~49인에서 47,554명으로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.
- 2019년 1월 15일 김용균 법(산업안전법 전부개정법률)이 공포되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확대되고, 이를 위반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 수준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재해자 수와 산업재해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.
-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기존 근로자에서 “노무를 제공하는 자”로 확대되었으며,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나 배달노동자처럼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하여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짐.
 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이 기존 수준보다 강화됨에 따라<sup>3)</sup> 향후 재해자 수와 산업재해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도급인이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,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,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음(기계신문, 2019. 1. 15일자).